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 2021.11.10]
(제정) 2021.11.10 조례 제2789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30-2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89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